

2025학년도 학급당 유아 수 기준 및 학급편성 안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2025학년도 유아모집과 관련하여 공·사립유치원에서 **학급 당 유아 수 기준**과 **학급편성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여건과 공평한 유치원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급편성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학급당 유아 수 및 학급편성 안내

○ 학급당 유아 수 기준(총괄) [학교설립기획과-9041(2024.10.10.)]

[단위: 명]

구분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3세	4세	5세	3~4세	4~5세	3~5세
최대	14~18	20~22	24~26	14~16	20~22	18~20
최소	5명 이상					

[참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 세부 기준

가. 학급당 최대 유아 수 (학급 정원)

구분	내용
대상 기관	공 · 사립 유치원
설정 기준	- 3세: 14~18명, 4세: 20~22명, 5세: 24~26명 ※ <u>기준범위 내에서 각 유치원별 자율적으로 결정 후 편성</u>
학급당 최대 유아 수 적정화	- 매년 학급당 최대 유아 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거 시정 요구하는 등 지도 · 감독할 예정 - 적정화 기준일: <u>매년 3월 학급편성</u> ▸ (유아모집 사실 확인 및 시정 요구) 유아모집 결과 및 예정 학급편성 보고 후 ▸ (시정명령, 유아모집 정지 등) 매년 3월 학급편성 완료 후 * 근거: 「유아교육법」 제30조, 제32조
학급편성 유의사항	- 학급 정원 내 분반 편성 불가(교육과정 운영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도모) ☞ 예) 5세반 유아 24명 모집 시(<u>학급편성 기준 24명인 경우</u>) 1개반 편성, 12명씩 2개반 편성 불가 ☞ 예) 5세반 유아 25명 모집 시(<u>학급편성 기준 24명인 경우</u>) 2개반 편성, 12명/13명 2개반 편성 가능 - 당해 유치원 전체의 정원충족률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학급으로 편성

나.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구분	내용	
대상 기관	공 · 사립 유치원	
설정 기준	- 학급당 최소 5명 이상	
학급편성 기준일	- 유아모집 완료 후, '24. 12. 10.(화) 기준(공립) ※ 유아 모집 등록 마감 및 추가모집(등록) 고려	
기준 적용	완성(인가) 1학급	최소 유아 수 기준 미충족 시, 당해 학년도 휴원
	완성(인가) 2학급 이상	최소 유아 수 기준 미충족 학급에 대하여 학급 미편성
학급편성 유의사항	-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 미충족 시 <u>휴원 또는 학급 미편성 원칙</u> (단, 예외적 학급편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급편성 가능)	
예외적 학급편성 ([별첨 1])	- (개념) 유아 공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학급편성 허용 ※ 단, 기본적인 유아 교육을 위해 <u>최소 2명 이상 시 적용 가능</u> ¹⁾	
	- (적용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② 탈북학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지정 유치원 ③ 해당 유치원 반경 1.5km 이내에 대체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 ④ 신설유치원 및「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통합형)」통합 운영 시작 당해 학년도 (연령별 1학급 편성) ⑤ 객관적 증빙을 통해 당해학년도 내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충족하여 학급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⑤호의 기준에 의해 학년도 말까지 학급을 운영하였으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다음 학년도에는 동일 사유로 예외적 학급편성 불가 ※ 유아 추가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추가모집 홍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은 적용 불가	

1) 재원 중인 유아의 경우에 한하여 '최소 2명 이상 시 적용 가능 기준' 적용 제외

다. 학급 미편성 및 휴원, 폐원 검토기준

구분	내용
대상 기관	공 · 사립 유치원
학급 미편성 또는 감축	- 완성(인가) 2학급 이상이면서, 학급편성 기준일 현재 최소 유아 수 기준(5명)을 미충족한 학급이 있는 유치원은 학급 미편성 또는 감축 ※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은 충족하나, 해당 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이면서 유아 수 부족 등으로 유아모집에 곤란을 겪는 유치원은 학급 미편성 또는 감축 검토
휴원	- 완성(인가)학급 모두 <u>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을 미충족</u>하여 학급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 휴원
폐원	- <u>최근 2년 이상 휴원</u> 중이며, <u>지역 내 향후 도시개발 등 인구 유입에 따른 유아 수 증가 가능성이 없는 경우</u> 폐원 검토

라. 특수학급 운영

구분	내용
대상 기관	공립유치원
적용 내용	- 특수학급은 <u>유치원의 전체 완성학급 수와 정원에 포함</u> - 특수교육대상자는 <u>연령별 일반학급 정원 내 배치</u> ※ 실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순회학급은 적용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 정원(4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외할 연령별 일반유아 정원은 원장이 자율 결정 ([별첨 2])

□ 유의사항

○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준수

가.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 인력운용의 효율성, 경기교육 재정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 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

나. 공평한 유아교육환경 조성, 유아의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대 유아 수(학급 정원) 기준 이내에서 적정 학급편성

※ 유아모집 완료 후, 학급당 최대 유아 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예정

○ 교육수요자 중심의 유아모집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3세의 유아부터 취학연령에 해당하며,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육과정을 연령별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5세반 위주의 유아모집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수요자 중심의 3~5세반 편성에 철저

※ 5세반 편성 위주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사각형(□) 구조로 3~5세반 편성

나. 완성(인가)학급 1학급 유치원의 경우, 5세반 위주 편성을 지양하여야 하며, 3~5세 대상 추가 모집을 통해 혼합연령 편성·운영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별첨 1

학급편성 관련 Q&A

1. 유아 모집 인원에 따른 학급 편성

Q1. 완성(인가) 2학급 [5세반 1학급, 3~4세반 1학급, 정원 42명]인 유치원에서, 총 10명 모집(3세 4명, 4세 2명, 5세 4명)하였을 때의 학급편성은?

A1. 1학급 편성 (3~5세 혼합연령 학급)
(예외) **2학급 편성** [예외적 학급편성 기준 충족 시]

Q2. 완성(인가) 3학급 [3~5세반 각 1학급, 정원 64명]인 유치원에서, 총 12명 모집(3세 4명, 4세 4명, 5세 4명)하였을 때의 학급편성은?

A2. 1학급 편성 (3~5세 혼합연령 학급)
(예외) **2학급 또는 3학급 편성** [예외적 학급편성 기준 충족 시]

Q3. 완성(인가) 1학급 [3~5세반 1학급, 정원 20명]인 유치원에서, 총 2명 모집(4세 1명, 5세 1명)하였을 때의 학급편성은?

A3. 당해 학년도 휴원
(예외) **1학급 편성** [예외적 학급편성 기준 충족 시]

Q4. 완성(인가) 4학급 [3세반 1학급, 4세반 1학급, 5세반 2학급, 정원 82명]인 유치원에서, 총 18명 모집(3세 4명, 4세 4명, 5세 10명)하였을 때의 학급편성은?

A4. 1학급 편성 (3~5세 혼합연령 학급) **또는 2학급 편성** (5세반, 3~4세 혼합연령 학급)
(예외) **3학급 편성** [예외적 학급편성 기준 충족 시]
(불가) **4학급 편성** (5세반 분반 불가)

Q5. 완성(인가) 4학급 [3세반 1학급, 4세반 1학급, 5세반 2학급, 정원 82명]인 유치원에서, 총 28명 모집(3세 7명, 4세 7명, 5세 14명)하였을 때의 학급편성은?

A5. 2학급 편성 (5세반, 3~4세 혼합연령 학급) **또는 3학급 편성** (연령별 학급 편성)
(불가) **4학급 편성** (5세반 분반 불가)

2. 예외적 학급편성 적용 사례

Q1. 예외적 학급편성 가능 여부 검토 시 '객관적 증빙을 통해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이상의 학급 구성이 예상되는 경우'의 사례는?

A1. 예외적 학급편성은 반드시 '객관적 증빙'으로 '당해연도 내에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을 초과하여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허용

- 사례①: 해당 병설유치원이 속해 있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 사례②: 전년도 대비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을 연장'하거나 '방과후 과정 운영 일수를 연장하는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당해 학년도 중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초과하여 학급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유아 추가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추가모집 홍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등은 적용 불가

별첨 2 특수학급 설치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관련 Q&A

Q1. 완성 2학급 [5세반 1학급(정원 24명), 특수 1학급]인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A1. 편성정원: 24명 (5세반 24명,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전체 정원에 포함)

☞ (5세반) 20명, (특수) 5세 4명 이내 배치 (동일연령 배치 원칙, 원장 재량에 따라 혼합연령 구성 가능)

Q2. 완성 3학급 [4세반 1학급(정원 22명), 5세반 1학급(정원 24명), 특수 1학급]인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A2. 편성정원: 46명 (4세반 22명, 5세반 24명, 특수학급 정원은 유치원 전체 정원에 포함)

☞ 편성정원에서 특수학급 정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모집

예① 특수학급 정원(4명) 사전 배치* 시

- (특수) 4세 3명, 5세 1명 배치된 경우 → (일반) 4세 19명, 5세 23명 모집(42명)
- (특수) 4세 2명, 5세 2명 배치된 경우 → (일반) 4세 20명, 5세 22명 모집(42명)

예② 특수학급 정원 미만(1~3명) 사전 배치 시

- (특수) 4세 1명, 5세 1명 배치된 경우
→ (일반) 편성정원(46명)에서 특수학급 정원(4명)을 제외한 **42명 범위 내에서, 원장이 연령별 모집 정원 자율 결정** (4세: 21~19명, 5세: 21~23명 범위 내)
→ (특수) 2명은 학기 중 추가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는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유아모집 전에 이루어짐